

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“요건신청”이란 수출입시 허가·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허가·승인 <u>그밖의</u> 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인터넷 통관포털</u>”(이하 “<u>통관포털</u>”이라 한다)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<a href="https://unipass.customs.go.kr">https://unipass.customs.go.kr</a>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.</p> <p>5. ~ 6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</p> <p>4. “<u>통관포털</u>”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정비</p>
<p>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「<u>관세법</u>」 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과</p>	<p>제7조(확인물품 및 확인사항) ① 「<u>관세법</u>」 (<u>이하 “법”이라 한다</u>)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조문 정비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별표 2와 같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「관세법」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,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. 다만,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확인요청) &lt;신설&gt;</p> <p>① <u>세관장에게 통관시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를 확인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관련법령</u></p>	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법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8조(지정요청) ① 관세청장은 매년 11월에 요건확인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 요청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수요조사 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출입물품의 요건구비 여부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을 요청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</u></p>	<p>○ 조문 정비</p> <p>○ 요건확인기관들이 지정요청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정기 수요조사 규정 신설</p> <p>○ 기존 제1항을 제2항으로 변경 및 세관장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· 대상물품 · 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<u>&lt;단서 신설&gt;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세관장이 요건구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방법, 연계시기 및 「관세법」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 · 요청내용 · 물품의 특성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, 전산망 연계 및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실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요건확인</p>	<p><u>호서식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에 관련법령 · 대상물품 · 대상물품별 HSK 10단위번호 및 요청사유 등을 기재하고 통관규제영향분석서 및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을 요청하려는 품목의 수가 10개(HSK 10단위를 기준으로 한다) 이하인 경우에는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제2항에 -----  -----  -----  <u>법</u> -----  -----.</p> <p>④ 제2항에 -----  -----  ----- <u>법</u> -----  ----- <u>세</u>  <u>관장확인대상의 지정 여부를</u> -----</p>	<p>확인대상 지정요청서식 신설</p> <p>○ 기존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 및 조문 정비</p> <p>○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 및 조문 정비</p>



현행	개정안	비고
<p>&lt;신설&gt;</p> <p>제9조(확인방법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<u>확인시</u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신고내역과 요건승인내역을 전산으로 상호 대사하여 자동으로 심사하는 전자심사제를 운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주무부 장관</u>이나 요건확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</li> <li>3. (생략)</li> </ol>	<p><u>통관 시 세관장이 세관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 품목 등의 정보를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⑧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품목이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을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9조(확인방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<u>확인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주무부장관</u> ----- -----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	<p>관계기관에 관련 정보제공 절차 마련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
<p>4. 동일 세번에 다수 법령 요건이 중복되어 신속통관의 저해가 우려되면서 <u>해당법령이 타 법령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제10조(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요청사유와 내용 등을 <u>검토한 후</u> 통관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>제11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</u>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까지</u>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4. ----- ----- <u>해당 법령- 다른 법령</u>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통관자료의 요청 및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검토한 후</u> 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</u> ----- ----- <u>6월 30일까지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재검토기한 재설정</p>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
<p data-bbox="107 240 277 280">&lt;신설&gt;</p> <p data-bbox="107 788 824 890">【별표 1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1 912 898 1114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1 912 510 954"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 data-bbox="510 912 898 954"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1 954 510 1114">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생물 (나)~(다) 생략</td> <td data-bbox="510 954 898 1114">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○ 생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data-bbox="107 1161 824 1264">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생물 (나)~(다) 생략	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○ 생략	<p data-bbox="929 240 1740 703"><u>부칙 (2023. 4. 7. 관세청고시 제2023-18호)</u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p> <p data-bbox="947 788 1664 890">【별표 1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31 912 1738 1114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931 912 1350 954"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 data-bbox="1350 912 1738 954"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931 954 1350 1114">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&lt;삭제&gt; (나)~(다) 현행과 같음</td> <td data-bbox="1350 954 1738 1114">○ &lt;삭제&gt; ○ 현행과 같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data-bbox="947 1161 1664 1264">【별표 2】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.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</p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<삭제> (나)~(다) 현행과 같음	○ <삭제> ○ 현행과 같음	<p data-bbox="1771 240 1986 280">○ 부칙 신설</p> <p data-bbox="1771 912 2150 1070">○ 수출 야생생물은 세관장확인대상에서 제외</p> <p data-bbox="1771 1283 2150 1385">○ 의약품에 첨단바이오 의약품 포함 명확화</p>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
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야생생물 (나)~(다) 생략	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야생생물 수출허가증 ○ 생략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
(6)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(가) <삭제> (나)~(다) 현행과 같음	○ <삭제> ○ 현행과 같음									

현행		개정안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 (가)~(나) 생략</td> <td>○ 생략</td> </tr> <tr> <td>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</td> <td>○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【별표 3】</b>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. 수입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&lt;신설&gt;</td> <td>&lt;신설&gt;</td> </tr> <tr> <td>&lt;신설&gt;</td> <td>&lt;신설&gt;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수출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&lt;신설&gt;</td> <td>&lt;신설&gt;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 (가)~(나) 생략		○ 생략	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<신설>	<신설>	<신설>	<신설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<신설>	<신설>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구비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(<u>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</u>) 및 한약재  (가)~(나) 현행과 같음</td> <td>○ 현행과 같음</td> </tr> <tr> <td>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</td> <td>○ <u>한국석유화학협회의</u> 수입확인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【별표 3】</b> 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. 수입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28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</td> <td>○ 수입확인 신청</td> </tr> <tr> <td>(2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 <td>○ 수입신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수출물품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</th> <th>대상업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</td> <td>○ 수출신고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( <u>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</u> ) 및 한약재  (가)~(나) 현행과 같음	○ 현행과 같음	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<u>한국석유화학협회의</u> 수입확인서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(28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수입확인 신청	(2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입신고	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(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출신고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 (가)~(나) 생략	○ 생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<신설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구비요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) 「약사법」 해당물품 중 의약품 ( <u>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</u> ) 및 한약재  (가)~(나) 현행과 같음	○ 현행과 같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11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,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	○ <u>한국석유화학협회의</u> 수입확인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8)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 해당물품	○ 수입확인 신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2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입신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	대상업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9)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해당물품	○ 수출신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현행	개정안	비고
<신설>	【별지 제2호서식】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 요청서	○ 요건확인기관에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지정요청 시 요청서식과 첨부서류 규정
<신설>	※ 첨부서류 서식(작성방법 포함) 1. 신규대조표	○ 첨부서류 참조 서식 및 작성방법 안내
<신설>	2. 통관규제영향 분석서	
<신설>	3. 품목분류 사전검토 결과 확인서	